

의안번호	2215078
의 퇴 인	강선영의원
회 답 일	2026.2.10.
추계번호	25D6815

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소방청과 시·도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 동안 총 5억원(연평균 1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 (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)	5	5	5	5	5	25	5
시·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 (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)	95	95	95	95	95	475	95
합계	100	100	100	100	100	500	100

주: 1.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(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), 시·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(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
2.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연간 개최 횟수, 민간위원 수 등을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의2제1항 (화재조사심의위원회) 신설	화재조사와 관련된 주요 정책,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2	안 제17조의2제2항 (화재조사심의위원회) 신설	관할 지역 화재조사 업무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소방본부에 시·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7조의2제1항 (화재조사심의위원회) 신설	○	-
2	안 제17조의2제2항 (화재조사심의위원회)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소방청과 19개 시·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
- 화재조사심의위원회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방청의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추계
-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(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)

- 본 추계에서는 소방청에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간 2회 개최하며 민간위원 수는 10명으로 가정
 - 유사사례인 소방청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는 신기술 및 신제품 심의를 연간 2회 개최하고 10명의 위원으로 구성
 - 민간위원의 1회당 참석수당은 25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
□ 추계결과, 소방청에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500만원으로 예상됨

-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고 민간위원 10명에게 참석수당을 25만원 지급하므로 연간 500만원(=2회×10명×25만원)의 추가재정소요 예상

[표 2]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
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	5	5	5	5	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시·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(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)

□ 본 추계에서는 19개 시·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간 2회 개최하며 민간위원 수는 10명으로 가정

- 유사사례인 소방청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는 신기술 및 신제품 심의를 연간 2회 개최하고 10명의 위원으로 구성
- 민간위원은 1회당 참석수당은 25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
□ 추계결과, 19개 시·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9,500만원으로 예상됨

- 19개 시·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고 민간위원 10명에게 참석수당을 25만원 지급하므로 연간 9,500만원(=19개×2회×10명×25만원)의 추가재정소요 예상

[표 3] 시·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
시·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	95	95	95	95	9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화재조사심의위원회 연간 개최 횟수, 민간위원 수 등을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